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0605호, 2020. 4. 7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기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위원회를 신설하고, 전통문화교육원의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·시행 업무를 교육기획과에서 교육운영과로 업무를 이관하며, 등록문화재제도를 시·도에 있어서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「문화재보호법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16057호, 2018. 12. 24. 공포, 2019. 12. 25. 시행)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문화재청 9명(7급 7명, 8급 2명), 국립고궁박물관 1명(7급 1명) 및 국립무형유산원 1명(8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, 세계유산팀 증원인력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5항제12호 중 “등록문화재”를 “국가등록문화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19호 중 “문화재수리인력·노임통계”를 “문화재수리인력·임금통계”로 한다.

제8조제6항제1호 및 제3호 중 “등록문화재”를 각각 “국가등록문화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문화재의 등록·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”를 “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·등록말소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“등록대상”을 “국가등록대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등록문화재”를 “국가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8호 중 “기획위원회”를 “대학평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·시행

제21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, “10명(7급 8명)”을 “9명(7급 7명)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1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각각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 5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56”을 “57”로 하고, 학예연구관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5의2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61”을 “62”로 하고, 학예연구관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는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)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(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, 행정서기 2명)으로서,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원 7명(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),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별표8의 2의 정원 1명(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) 및 별표15의2의 정원(시설서기 1명)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(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)으로서,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원 2명(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)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문화재보존국) ① ~ ④ (생략)	제7조(문화재보존국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유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국보·보물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<u>등록문화재</u> 가 아닌 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	12. ----- ---- <u>국가등록문화재</u> ----- ----- --
13. ~ 20. (생략)	13. ~ 20. (현행과 같음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⑦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 -----.
1. ~ 17. (생략)	1. ~ 17. (현행과 같음)
18. 삭제	
19. <u>문화재수리인력·노임통계</u> 에 관한 사항	19. <u>문화재수리인력·임금통계</u> -----
20.·21. (생략)	20.·21. (현행과 같음)
제8조(문화재활용국) ① ~ ⑤ (생략)	제8조(문화재활용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국가민속문화재(건조물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	1. ----- -----

· 사적(근대 건축물 및 시설 물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항에 서 같다) 및 <u>등록문화재</u> 의 보 존·관리·활용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·조정 및 시행	----- ----- ----- <u>국가등록문화재</u>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국가민속문화재·사적 및 <u>등 록문화재</u> (이하 “국가민속문화 재등”이라 한다)의 기초조사 및 정기·직권조사에 관한 사 항	3. ----- <u>국 가등록문화재</u> ----- ----- ----- --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문화재의 등록·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</u>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	8. <u>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·등 록말소와</u> ----- -----
9. <u>등록대상</u> 문화재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	9. <u>국가등록대상</u> ----- -----
10. <u>등록문화재</u> 유형별 등록기 준 마련·운용에 관한 사항	10. <u>국가등록문화재</u> ----- -----
11. ~ 18. (생 략) ⑦·⑧ (생 략)	11. ~ 18. (현행과 같음) ⑦·⑧ (현행과 같음)
제9조(한국전통문화대학교) ① (생 략)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. 1. ~ 7. (생 략)	제9조(한국전통문화대학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<u>기획위원회의</u> 운영에 관한 사항 9. ~ 26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8. <u>대학평의원회</u> ----- -- 9. ~ 2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전통문화교육원) ① (생 략)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5. (생 략) 6. <u>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 · 시행</u> 7. ~ 13. (생 략)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전통문화교육원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7. ~ 13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 · 시행</u>
제21조(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「문화재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」 제34조제1항 단 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 원의 <u>5퍼센트</u>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	제21조(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 <u>7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

으며, 별표 5의2의 정원 중 <u>10명</u> (7급 8명, 8급 2명)은 일반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----- 9명 (7급 7명)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	제2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. 다만, 「문화재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」 제35조제1항 단 서에 따라 총정원의 <u>5퍼센트</u>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, 별표 8의2 의 정원 중 1명(7급 1명)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③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7퍼센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삭제	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⑨·⑩ 삭제	
⑪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. 다만, 「문화재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」 제35조제1항 단 서에 따라 총정원의 <u>5퍼센트</u>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	⑪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7퍼센트----- ----- -----

별표 15의2와 같으며, 별표 15 의2의 정원 중 1명(8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----- ----- -----.
⑫ ~ ⑭ (생략)	⑫ ~ ⑭ (현행과 같음)
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	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7명(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, 행정서기 2명), 별표 8의2의 정원 1명(행 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명), 별표 13의2의 정원 3명(행 정서기 2명, 시설서기 1명) 및 별표 15의2의 정원 1명(시설서 기 1명)은 2020년 12월 28일까 지 존속한다.	<삭제>
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	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5]

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	· ·	· ·	
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 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 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 관·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	56	57	+1
· · 학예연구관	· · 3	· · 2	-1
· ·	· ·	· ·	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
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
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
2명(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
사 2명)은 2020년 12월 28일까
지 존속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
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
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
원의 존속기간) 종전의 문화체
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
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
정원(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
또는 시설주사보 1명)으로서,
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
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(행
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
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
또는 학예연구사 1명)은 2021년
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
한다.

<삭 제>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
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
칙 일부개정령 부칙

<삭 제>

[별표 5의2]

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 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 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 관·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61</u>	<u>6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학예연구관	<u>3</u>	<u>2</u>	-1
·	·	·	
·	·	·	